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편업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 적용 배제〉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3456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우편업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 적용 배제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 출 일 : 2025. 10. 2.

다. 회부연월일 : 2025. 10.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
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
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
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우편업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 적용 배제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

	<u>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u>
--	--

나. 검토사항

□ 우편업무에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운송 업무의 일부를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주로 부피가 큰 소포우편물을 취급하고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25년 10월 기준 2,156대의 자가용 화물자동차¹⁾를 보유·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체국소포의 형태로 우편물 운송에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67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²⁾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그에 따라 우편업무에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³⁾ 동 개정안을 통해 우편업무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우편업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 적용 배제

- 화물은 사전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유형의 재화나 물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화물로 보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해 보임.
-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대개 민간 부문에서의 영역인 반면, 우편사업은 「우편법」에 따라 국가가 경영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 볼 필요가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관하여 우체국이 직접 수행하던 우편물 운송 업무를 산하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이관하면서 관계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3) (재)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위탁배달원을 상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이 수행하는 운송업무의 성격은 국가의 공공 필수역무의 일부를 우편법령에 따라 대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화물운송에 관하여는 우편법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함. [서울중앙지검 처분결과(2011. 8. 25.)]

기관인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우편물 운송차량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권해석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를 적용 배제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외를 적용받는 경우와 ②개별 법령에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49조4)에 따라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등에 한해 화물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음.
 -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⁵⁾ 등 법률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 5) 「산림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면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국가기관이 아닌 조합의 근거법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적용 배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운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우편 역무를 수행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상운송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우편물(통상, 소포) 중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은 민간과 경쟁하는 택배서비스와 유사함을 감안하여,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임.
- 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는,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통합물류협회가 우편업무는 실상 생활물류(택배)와 동일한 서비스이므로, 기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우편업무와 화물운송업무는 적용 법률이 다르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는 차원의 입법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사항을 통합물류협회에 설명하고 동 법개정에 대해 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235

6)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운송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과 관련하여 2024년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 시 법제도 정비를 협의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